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2일,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7.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 상정, 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건영 의원)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6조제1~2항),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중 1인이 선출되고 있음.¹⁾

1987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을 통해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도

1) 김태홍,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3권제3호, 2012, p.79.

입되었고, 이후 1992년 11월 일부개정을 통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를 확대하였음(법 제6조제1항).²⁾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무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1992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력 내역 》

상임위원 대수	성명	상임위원 재임기간	직전 경력
8대	한원도	1988.12.~1994.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9대	김봉규	1994.12.~200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0대	김수장	2000.12.~2001.09.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1대	정수부	2001.09.~2004.09.	법제처장
12대	정홍원	2004.10.~2006.09.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13대	김호열	2006.10.~200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4대	강경근	2009.12.~2012.12.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15대	이종우	2012.12.~2015.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6대	문상부	2015.12.~2018.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7대	조해주 ³⁾	2019.01.~2022.01.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18대	김필곤	2022.5.~현재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25. 5. 1. 확인)

법상 상임위원의 사무처 감독권한이 규정된 1992년 이후 재직 한 상임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은 총 6인으로, 이중 직전 경력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인 사례는 5인이며, 이들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

2)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4496호, 1992.11.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중

3) 해당 경력 이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인사임.

회 사무총장 재직 후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인 동시에 사무처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비상임인 다른 위원들보다 선거 관리 업무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그러나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문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⁵⁾

특히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

4) 16대 문상부 상임위원의 경우 2014년 11월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2015년 12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약 1년 1개월의 공백이 있고, 그 외 4인은 공백 없이 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음.

5) 조선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 ‘또 親與 상임위원 임명’ 시위”, 2022.1.24.

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회계·세무법인, 의료법인 등
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
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곳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⁶⁾⁷⁾

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후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임에 제한하려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인사가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활
용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⁸⁾ 선거관
리위원회 경력만을 상임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
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 대

6)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
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
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
다.

7) 해당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 시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2
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취업제한기간은 3년,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은 5년
으로 각각 확대되었음.

8) 선거관리위원회 경력보다 정당의 당원 이력이나, 특정 후보자의 대선 캠프 경력 등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사례가 존재함. 뉴시스, “행안위, 강경근 선관위원 후보 '정치 편향' 공방”, 2009.12.3., 중앙일보, “[단독] 선관위
2900명 전부 들고일어났다...조해주 백기 전말”, 2022.1.21.

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사람의 공직 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인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사람의 공직 취임권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제한 대상 및 기간, 다른 합의제 기관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칙에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려는 것이나, 현

행법 제6조제2항이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의 표현을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칙에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6조제2항은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의 표현을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제한”을 “호선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후”를 “이후 호선되는”으로, “상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를 “상임위원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상임위원의 <u>제한</u> 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u>이후</u>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u>상임위원</u> <u>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u> <u>터</u> 적용한다.	제2조(----- <u>호선 제한</u> --- -----) ----- ----- <u>이후</u> <u>호선되는</u> ----- --- <u>상임위원부터</u> -----.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호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第6條(常任委員) ① ----- ----- ----- ----- ----- ----- -----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